

# 「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2016. 9

임기수

- 논의 배경 ..... 4
- 「기업활력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4
-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필요성 ..... 12
-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18



-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저유가 유지 정책,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안 요소의 증대로 인하여 국제 상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의 경영 위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있음.
- 건설기업 또한 기업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제, 금융, 법률상의 혜택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동법의 시행 및 활용시 이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아울러 정책 산업으로서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서 과잉공급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을 위한 과잉공급 지표는 과잉공급업종의 선제적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의 현황 및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 이에, 본고에서는 건설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법의 주요 혜택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건설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과잉공급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과잉공급 해당 업종 : **(기존)** 5개의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변경)** 4개의 보조 지표 또는 건설 지표 중에서 2개 이상 충족.
  - 건설 지표는 영업이익률, 매출원가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총자산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업종지표(건설업체 수, 건설 수주액, 건설 기성액, 무실적 업체 수) 등으로 구성.
-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 지표를 활용을 통해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은 과잉공급업종 증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원활한 과잉공급업종 상태의 증명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선제적 사업 개편을 통한 기업 체질 강화라는 「기업활력법」 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제도의 적용 기간 연장 또는 폐지, 조세 감면 범위 확대 등 「기업활력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 I 논의 배경

- ❖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의 경영 위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체력을 강화시키고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업활력법」이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 「기업활력법」이 사업재편 기업의 세제, 금융, 법률상의 많은 혜택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설기업은 「기업활력법」의 시행 및 혜택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 또한, 현재 발표된 과잉공급 지표는 제조업 중심의 지표로서 건설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기업활력법」상의 수혜를 누리기는 어려움.

  - 「기업활력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과잉공급업종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음.
- ❖ 이에, 본고에서는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 지표의 선정 및 동법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함으로써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와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 II 「기업활력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1. 제정 배경 및 경과

#### (1) 제정 배경

- ❖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던 해운, 조선, 철강, 건설 관련 분야 기업은 중국 및 신흥국의 동 산업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이익률 하락으로 지속 경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 더불어 원자재 및 소비재를 주로 생산하는 중견·중소 기업 또한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 감소와 기업간 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임.
- ❖ 이렇듯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의 불확실성 및 경쟁이 증대됨에 따라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앞서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등 부실 징후 기업 또는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정책은 이미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책은 「기업활력법」 이전에는 논의되지 않았음.
- ❖ 이에 정부에서는 정상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및 법률적 혜택을 주요 내용으로 한 3년 한시의 「기업활력법」을 제정하였음.
  - 주요 지원 내용으로 조직 재편 활동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지주회사 규제에 대한 유예 기간 연장, 사업 혁신 활동 지원을 위한 세제·금융 혜택, 고용 안정 지원 방안 등을 들 수 있음.

## (2) 제정 경과

〈표 1〉 「기업활력법」의 제정 및 시행 과정

일자	내 용
2015. 7. 9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27인 발의
7. 1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부
10. 28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 회부
11. 2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 소위 / 상정, 축조심사
11. 17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 소위 / 상정
12. 1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9차 법률안 소위 / 상정
12. 29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 소위 / 상정
2016. 1. 25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 소위심사 보고, 의결(수정가결)
1. 25	·제33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 소위 /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2. 4	·제 339회 제1차 본회의 심의 / 수정가결
2. 5	·정부 이송
2. 12	·「기업활력법」 공포(공포번호14030)
3. 7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산업자원통상부)
6. 2	·실시지침 제정안 공포
8. 13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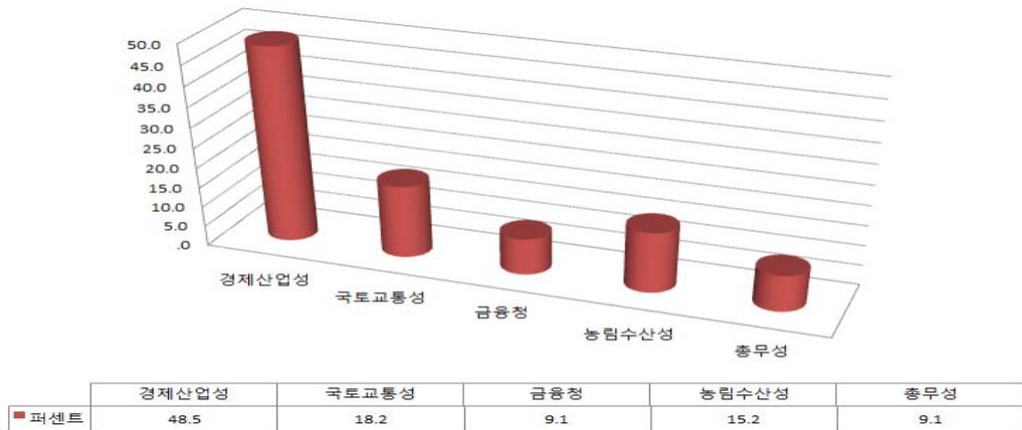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 「기업활력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검토되었으나 부처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중단된 후 지난 2015년 7월 9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됨.
  - 지난 2016년 2월 12일 「기업활력법」이 공포되었으며, 동년 6월 2일 실시지침이 공포된 후, 8월 13일 시행됨.
- + 「기업활력법」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건설산업 지원 현황

- +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10월 「산업활력법」<sup>1)</sup>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는 「산업경쟁력강화법」<sup>2)</sup>으로 확대 개정하여 시행 중임.
  -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사업재편 지원제도<sup>3)</sup>, 규제 개혁, 중소기업 창업 지원, 벤처기업 자금지원, 설비투자 지원제도 등을 담고 있음.
- + 일본 정부는 2014년~2016년 3월 말까지 (일반)사업재편계획 28건과 (특정)사업재편계획 5건 등 총 33건의 사업재편 기업을 지원함.
  - 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성 소속 기업 16개, 국토교통성 소속 기업 6개, 농림수산업성 소속 기업 5개, 금융청 소속 기업 3개, 총무성 소속 기업 3개가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을 받음.

〈그림 1〉 일본의 사업재편 계획 주관 부서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1) 버블경제 붕괴 당시 일본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생산성 저하 및 과잉 채무 설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9년 제정된 한시법으로 세제, 금융, 법률적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중 우리의 「기업활력법」과 유사한 ‘사업재편 계획’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함.  
 3)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의 재편 계획 수립시 예상되는 생산성 및 재무 건전성 개선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업재편계획’과 ‘(특정)사업재편계획’으로 구분됨.

- 사업재편에 대한 주요 지원 사항은 신규 사업 등록에 따른 면허세 경감, 장기·저리 대출 알선,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sup>4)</sup>를 통한 채무 보증 지원 등임.
- 일본의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 건설기업은 「기업활력법」 활용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세제 지원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주관하는 사업재편 6개 기업 모두 등록면허세를 경감 받음.

〈표 2〉 국토교통성 주관 (일반)사업재편 계획 승인 실적

사업자명	지원 조치	지원 내용
토사전기철도(주) 토사전기드림서비스(주) 고치현 교통공사	· 사업 통합(공동 분할 후 신설 회사 설립)	· 등록면허세 경감
자오관광개발공사	· 모회사 분할 승계를 통한 사업 일원화	· 등록면허세 경감
M해운엔지니어링(주) M해산체공사	· 경영 자원의 최적 배치	· 등록면허세 경감
일본포장운수창고(주)	· 자회사 체제로 전환	· 등록면허세 경감
간키네펀철도(주)	· 자회사 체제로 전환 및 사업의 분사화를 통한 기업 가치의 향상	· 등록면허세 경감
(주)제로코퍼레이션	· 사업 분할	· 등록면허세 경감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및 주요 지원 내용

### (1) 기존 사업재편 지원제도와의 차이점

- 과잉공급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의 수혜 대상임.
  - 부실(징후)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수혜 대상이었던 기존 사업재편 지원제도와는 달리 과잉공급 분야에 해당하는 전 기업을 대상으로 함.
  - 과잉공급 분야의 국내 기업이 합병, 분할, 회사 설립처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여 신산업 진출 및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사업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은 「기업활력법」 수혜 가능함.

4) 일본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 공공 컨설팅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SMRJ :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 2004년 7월 중소기업종합사업단(JASMEC, 1962년 설립), 지역진흥정비공단(JRDC, 1962년 설립), 산업기반정비기금(ISIF, 1986년 설립)의 3개 법인을 합병하여 설립된 독립 행정 법인임.

5) 토사전기철도(주), 토사전기드림서비스(주), 고치현 교통공사 등은 주력 사업의 채산성 악화 및 채무 상환 곤란 등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각 사의 모든 사업을 신생 회사인 토사전기교통주식회사로 이전 및 통합하고 기존의 세 회사는 청산함. 사업재편 계획 활용을 통해 세 회사는 신생 회사의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세 경감 및 회사 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세율의 경감 조치를 받음.

- 단,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 대상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활력법」은 신용등급이 A 또는 B이고,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함.

- 신용등급이 C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신용등급이 D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도산법」과는 다름.

❖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의 주체가 되는 반면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통합도산법」은 법원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조조정법과 차별됨.

〈표 3〉 「기업활력법」과 현행 사업재편 지원제도와와의 차이점

구분	적용 대상	신용등급	특징
「기업활력법」	- 과잉공급 분야 기업 <sup>6)</sup>	A, B	- 선제적, 자율적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부실(징후) 기업	C	-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워크아웃, 금융 지원 한정)
「통합도산법」	- 부실 기업	D	- 법원 주도의 회생 또는 파산 절차 (법정관리)
「중소기업사업전환법」	- 중소기업(상장법인 제외)		-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 지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중소기업 중 벤처 대상) / 상장법인 제외		- 벤처기업의 창업 중심 지원

자료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

## (2)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례의 주요 내용<sup>7)</sup>

❖ 기업의 사업재편<sup>8)</sup>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절차의 간소화, 주총 절차의 간소화, 사업재편시 기업의 자금부담완화 제도 등을 담고 있음.

- 「기업활력법」은 기업 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편하는 국내 기업에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우선됨.<sup>9)</sup>

- 「상법」에는 소규모 분할제도가 없었으나 「기업활력법」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이 승인된 기업이 소규모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제도 신설.

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 대상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7) 「기업활력법」 지원 제도는 크게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례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특례와 '기타 지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참조.  
 8) 사업재편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함.  
 9)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참조.

〈표 4〉 「상법」상 특례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

조직 재편 간소화	소규모 분할제도	·소규모 분할시 이사회 결의로 같음
	소규모 합병, 소규모 주식 교환 범위 확대	·조직 재편에 반대하는 주주의 요건은 강화. (상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 소규모 합병 등이 불가하였으나 이를 (「기업활력법」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직 재편에 반대하는 주주 요건 강화
	간이 합병 범위 확대	·합병 회사가 피합병 회사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시 피합병 회사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같음할 수 있음. 주식 보유 요건을 90%에서 80% 이상 보유로 완화
주총 절차 간소화	기준일 설정 및 주주명부 폐쇄 기간 공고 시기 단축	·상법상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정한 때에는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7영업일 전으로 단축
	주주총회 개최 공고 및 서류 비치 시기 단축	·상법상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2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나 이를 7영업일 전으로 단축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단축	·상법상 조직 재편 과정에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의제출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이를 10영업일 이상으로 단축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서 제출시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 생략 가능)
	주식매수 청구권 신청 기간 단축	·상법상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를 10일 이내로 단축
자금 부담 완화	주식 매수 청구액 지급 기간 연장	·상법상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회사는 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상장 법인의 경우 1개월)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나 이 기간을 6개월 이내(상장 법인은 3개월 이내)로 연장

자료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례의 주요 내용

#### ■ 사업재편시 제기되던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

- 기업결합 신고시 청구 단일화 특례,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등이 있음.
- 「공정거래법」 특례는 승인된 사업재편 기간 내에서만 적용되고 사업재편 기간이 종료하면 특례는 일몰하고 원래대로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제를 받음.

〈표 5〉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1)

기업결합 신고 참고 단일화 특례		
기업결합 신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의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은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20%(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거나 20% 이상 소유한 자가 당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대 출자자로 되는 등의 기업결합을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승인기업이 자회사인 경우	부채비율 완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자본 총액 200% 이내로 제한되지만,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200%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3년 동안은 동 부채비율 기준 적용 유예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지주회사가 신규로 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 동안 적용 유예
	비계열사 및 자회사 외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제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계열회사의 지분을 당해 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에게는 비계열사 및 자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주력 사업 육성이나 비계열사와의 전략적인 제휴 가능
승인기업이 자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 보유주식 기준 적용 유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하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신규로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과정에서 3년 간 손자회사 보유주식 기준 적용을 유예. 자회사의 재무 부담 완화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 출자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독 출자만 가능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승인 기업은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여 신사업 진출 가능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증손회사 지분 보유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100% 소유를 통해서만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고, 이러한 지분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각하여야 하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에 50% 이상 출자가 가능. 2개 이하의 손자회사가 승인을 받아 증손회사에 50%씩 공동 출자가 가능
	지주회사 자회사의 공동 출자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설립 또는 보유하기 위해서는 단독 출자만 가능하고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승인 기업은 손자회사에 공동 출자하여 신사업 진출 가능

〈표 6〉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규제 완화	
승인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할 경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할 수 없으나 합병 등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상호출자나 신규 순환출자를 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을 출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나 사업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순환출자나 상호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환출자·상호출자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승인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할 경우	·채무보증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나 사업재편 과정에서 채무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국내 계열사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경우에 채무보증금지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

(4)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와 기타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에서는 기업이 사업재편시 활용할 수 있는 세제 및 자금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음.

〈표 7〉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례, 기타 지원제도

세제 지원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교환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교환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 이연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이연 후 3년 분할 납부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 채무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모회사) 자회사 채무 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모회사 법인세 감면
	자산 양도로 금융 채무 상환시 과세특례	·재무 건전성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 상환 자금 마련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 납부
	주주 등이 자산 무상 증여시 과세특례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 법인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 납부 (주주 등) 증여재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감면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 면제시 과세특례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4년 이연 후 3년 분할 납부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 감면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 설립 등기시 또는 합병·증자·회사 설립 등으로 회사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자산증가분의 0.4%)를 50% 감면
자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방법으로 지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설비투자 / 공장의 신설, 이전, 증설시 자금 지원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한 경영 혁신 활동 등에 가능)	
기타 지원	·연구 활동비 지원 / 중소기업의 사업 혁신 지원 /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 /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등	

■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식 매각 및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이연 및 증권거래세의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등이 있음.

- 그 밖에, 기업의 사업재편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혁신 지원, 연구개발 활동비 지원, 각종 규제 애로 해소 지원 등의 방안을 담고 있음.

### Ⅲ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필요성

#### 1. 「기업활력법」 활용 필요성

##### (1)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표 8〉 GDP 내 건설업 생산 및 투자 비중

(단위 : 십억원, %)

연도	GDP	건설업(비중)		건설투자(비중)	
2006	966,054.6	54,813.0	5.7	165,044.6	17.1
2007	1,043,257.8	57,993.5	5.6	175,599.5	16.8
2008	1,104,492.2	57,617.5	5.2	190,125.7	17.2
2009	1,151,707.8	59,610.0	5.2	200,152.7	17.4
2010	1,265,308.0	58,633.7	4.6	200,618.3	15.9
2011	1,332,681.0	58,587.3	4.4	205,667.8	15.4
2012	1,377,456.7	59,959.4	4.4	201,699.2	14.6
2013	1,429,445.4	64,250.5	4.5	213,106.3	14.9
2014 p	1,485,078.0	66,954.8	4.5	218,427.6	14.7
2015 3/4p 누적	1,152,966.8	49,368.5	4.3	164,070.1	14.2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국가 GDP 중 건설산업의 생산 및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위상 약화 추이는 쉽게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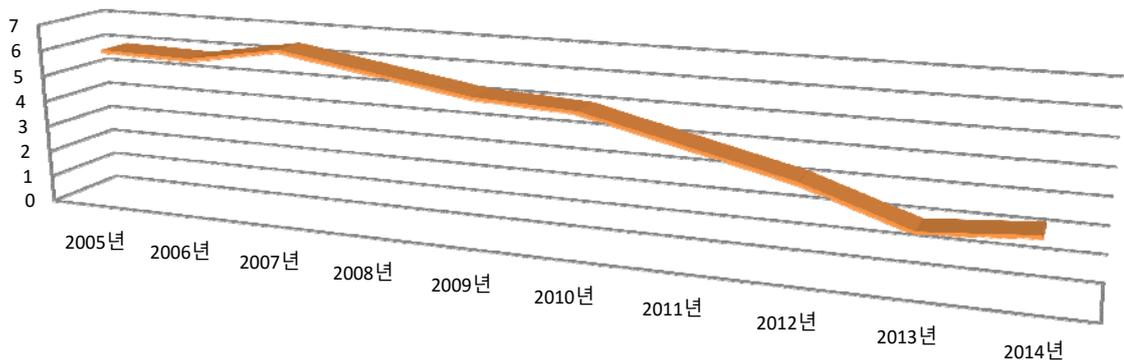
- 조사기간(2006~2015년 3분기) 중 GDP 내 건설업 생산 비중은 지난 2006년(5.7%) 고점 달성 후 하향 추세에 있으며, 건설투자 비중 또한 2009년(17.4%)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과잉 공급의 주요 판단 기준<sup>10)</sup>인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건설업종별 지표 또한 10년 전에 비해 최근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최근 3년 평균이 약 47.8% 하락하여 건설기업의 영업 효율성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설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 2004년 5.9%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2% 내외에 머물고 있음.

〈그림 2〉 최근 10년 간 매출액영업이익률 변화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매출액영업이익률	5.9	5.8	6.4	5.8	5.2	5	4.1	3.2	1.9	2.2

자료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 건설산업의 매출액증가율 역시 지난 10년 평균보다 3년 간의 평균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선제적 사업 개편의 필요성이 증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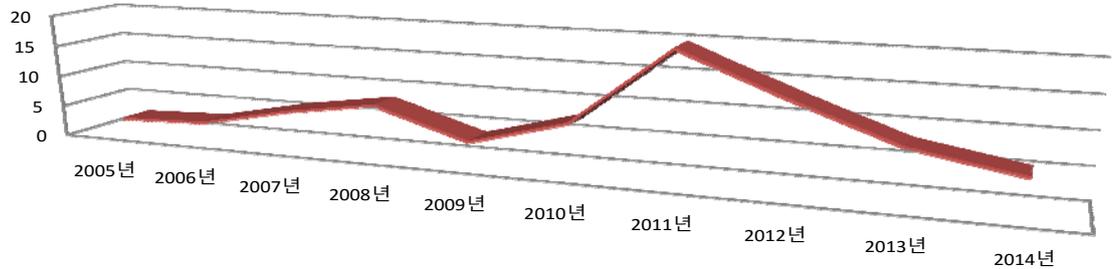
- 건설산업의 매출액증가율<sup>11)</sup> 역시 지난 2011년 이후 하락 추세에 있음. 건설산업의 외형 축소는 산업 경쟁력 약화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함.

10)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과잉공급 판단 기준은 매출액영업이익률, 5개 보조 지표(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수요 회복이 난망한 업종 기준에 해당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11) 매출액증가율은 당해 연도 매출액의 전년도 실적에 대한 증가율 및 정상적 경영 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시장 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변화를 의미하는 척도로 해석되고 있음.

〈그림 3〉 최근 10년 간 매출액증가율 변화

(단위 :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증가율	2.4	2.9	5.9	8.1	3.6	7.7	19.6	13.6	8.1	5.4

자료 : 「건설업 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 (2) 주요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 세계 시장 내 주요 경쟁국인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우리 건설산업은 시장의 안정성, 건설 제도, 인프라 등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sup>12)</sup>
-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역량 제고와 함께 안정적인 시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업 스스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체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이 절실함.
  - 최근 국내 건설기업들의 매출 증대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관리 역량의 진보 없이 지속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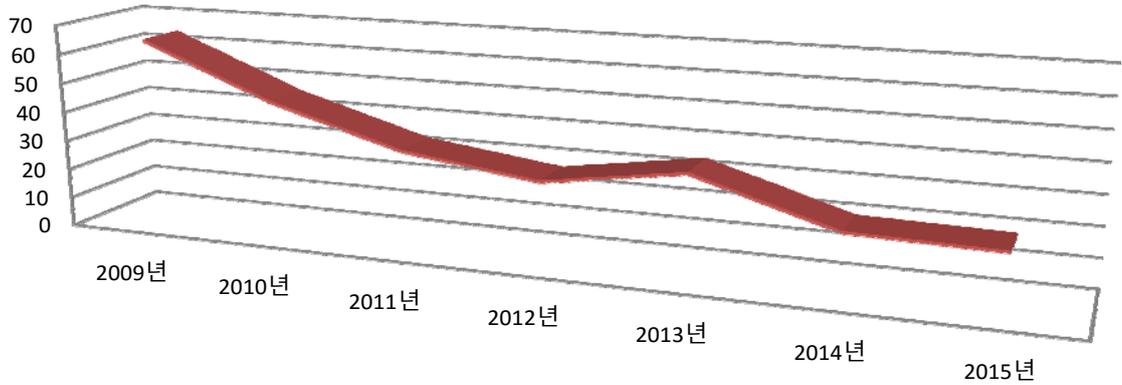
## (3) 건설기업 양수도 현황

-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과잉산업 지표의 활용이 전제될 경우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이용은 연 30건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유추를 위해 최근 7년(2009~2015년) 간 인수, 합병, 신규 진입을 사유로 한 종합건설업체의 기업 양수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간 양수도는 총 243건에 달함.
  - 건설기업간 양수도는 2009년 64건이 이뤄진 이후 2015년에 19건으로 급격히 축소됨. 건설기업의 체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려면 적절한 정책적 지원 제도가 필요함.

1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종합평가', 2016. 2.

〈그림 4〉 연도별 건설기업 양수도 현황

(단위 : 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 양수도기업	64	46	33	27	34	20	19

■ 적절한 과잉공급 지표가 적용될 경우 「기업활력법」의 주요 활용대상은 토건 및 토목 면허 보유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임.

- 동일 면허 소유 기업간에 합병 또는 사업 양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서로 상이한 면허를 소유한 경우의 면허 양수도는 주로 지역 내에서 국한될 것으로 판단됨.

〈표 9〉 양수도 건설기업의 주요 특징<sup>1)</sup>

양도 건설 회사 지역	양수 건설회사 지역	주요 특징 <sup>2)</sup>
강원(12)	강원(7) / 부산(1) / 경기(3) / 서울(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경기(39)	전북(1) / 경기(26) / 인천(1) / 부산(2) / 충남(2) / 서울(3) / 경남(2) / 충북(1) 경북(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 건축 → 건축, 조경 → 조경 양도 일부
경남(17)	경남(13) / 서울(1) / 전남(1) / 부산(1) 경기(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경북(16)	울산(2) / 경북(9) / 충남(1) / 경기(1) 강원(2) / 대구(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광주(6)	광주(4) / 세종(1) / 전남(1)	· 토건 → 토건, 건축 → 건축 양도 혼재
대구(6)	경북(1) / 대구(4) / 경기(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대전(9)	세종(1) / 대전(5) / 충남(6)	· 토건 → 토건, 건축 → 건축 양도 혼재
부산(15)	경북(1) / 부산(13) / 충남(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서울(39)	인천(4) / 서울(22) / 전남(3) / 경기(2) / 충남(1) / 강원(1) / 충북(2) / 세종(2) / 경북(1) / 부산(1)	· 토건 → 토건, 건축 → 건축 양도 혼재
세종(1)	전북(1)	
울산(13)	부산(1) / 울산(9) / 경기(1) / 경북(1) / 강원(1)	· 토건 → 토건으로 양도가 다수
인천(11)	경남(1) / 전북(2) / 전남(1) / 인천(6) / 경기(1)	· 토건 → 토건, 건축 → 건축 양도 혼재
전남(24)	전남(22) / 전북(1) / 경남(1)	· 토건 → 토건, 건축 → 건축, 토목 → 토목 양도 혼재
전북(12)	전북(9) / 인천(1) / 경기(1) / 세종(1)	· 토건 → 토건, 건축 → 건축, 토목 → 토목 양도 혼재
제주(2)	제주(2)	· 건축 → 건축 양도가 전부
충남(15)	경기(2) / 충남(9) / 대전(1) / 광주(1) / 경남(1) / 제주(1)	· 건축 → 건축, 토건 → 토건 양도 혼재
충북(6)	충북(5) / 전북(1)	· 토목 → 토목, 토건 → 토건 양도 혼재

주 : 1) 건설기업의 양수도에 관련한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의 협조를 얻어 진행되었음.  
 2) 양도사의 주업종과 양수사의 주업종으로 표기하였음(토건 → 토건은 토건 면허 보유 기업이 토건 면허 보유 기업으로 인수됨을 의미).

## 2. 「기업활력법」 활용을 위한 전제<sup>13)</sup>

### (1) 과잉공급<sup>14)</sup> 분야의 증명

■ 사업재편 요청 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을 위해서는 아래 <표 10>과 같이 소속 산업이 과잉공급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 과잉공급업종의 증명을 위해서는 <표 10>의 필수지표 및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함.
-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년 평균보다 작으며 당분간 수요 회복이 어려운 업종에 속하여야 하며 가동률, 재고율,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기타 업종별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13)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상의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승인이 필요하며 이행 및 보고 의무가 있음.

14) 과잉공급의 개념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정확한 정의나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는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음.

〈표 10〉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

필수	매출액 영업이익률	- 최근 3년 간의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수요 회복 전망 업종	-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과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2가지 충족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큰 경우(낮을수록 유휴 설비가 많다고 해석 됨)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큰 경우(증가될수록 과잉공급 상태가 심화된다고 해석)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값에 비해 과거 3년 평균값이 악화된 정도가 서비스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큰 경우(과잉 공급시 지수 악화)
	가격·비용 변화율	- 해당 업종 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율이 작거나 큰 상태
	업종별 지표	- 업종별 지표로 국내·외 전문기관 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실시지침 제정안(2016. 6. 2)을 바탕으로 재구성.

## (2) 사업재편 계획과 목표 설정

### ■ 사업재편 신청 기업에게는 생산성 및 재무 건전성의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부여됨.<sup>16)</sup>

-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은 목표에 대한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매년 주무부처에 보고할 의무를 가짐.
- 생산성은 국내 여건, 기업 상황,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및 비슷한 기준의 다른 지표 중에서 1개 이상이 개선된 지표가 있어야 함.
- 재무건전성은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많아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6) 「기업활력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안) 제6조.

## IV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1. 건설산업 과잉공급 지표의 선정

#### (1) 건설지표 선정의 필요성

❖ 정책 산업으로서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잉공급 지표의 사용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0>에서 제시된 과잉공급 지표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제조업 중심의 지표로서, 이 지표를 이용하여 과잉공급산업의 해당 유무를 판단할 경우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산업은 투자와 생산의 반복성과 규칙성이 낮고 주문에 의해 생산을 시작하는 산업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제조업의 활용 지표인 가동률, 재고율, 가격·비용 변화율 등을 건설산업의 과잉공급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정부의 주거 및 SOC에 대한 재정 투자 방향에 의해 종사자 수가 달라지므로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자수 또한 건설산업에 적합한 지표라고 볼 수 없음.

❖ 건설산업을 위한 과잉공급 지표는 ‘과잉공급업종의 선제적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의 현황 및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 종합, 전문 등의 업종 구분은 건설산업 공사 종류에 따른 구분이며, 동일 건설기업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으므로 건설 지표의 선정시 업종의 구분은 무의미함.
- 더불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이한 경영 통계 자료의 분석으로 균형적인 지표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2) 건설산업 과잉공급 지표(안)

❖ 건설산업의 현황을 반영한 과잉공급 지표로 정책 및 수주 산업으로서의 특성과 건설기업의 사용 편리성을 감안하여 <표 11>의 ‘재무비율 분석’ 사용을 제안함.

- 재무비율 분석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과분석 기법이며 작성의 간편함과 해석의 편리함으로 인해 다양한 규모의 건설기업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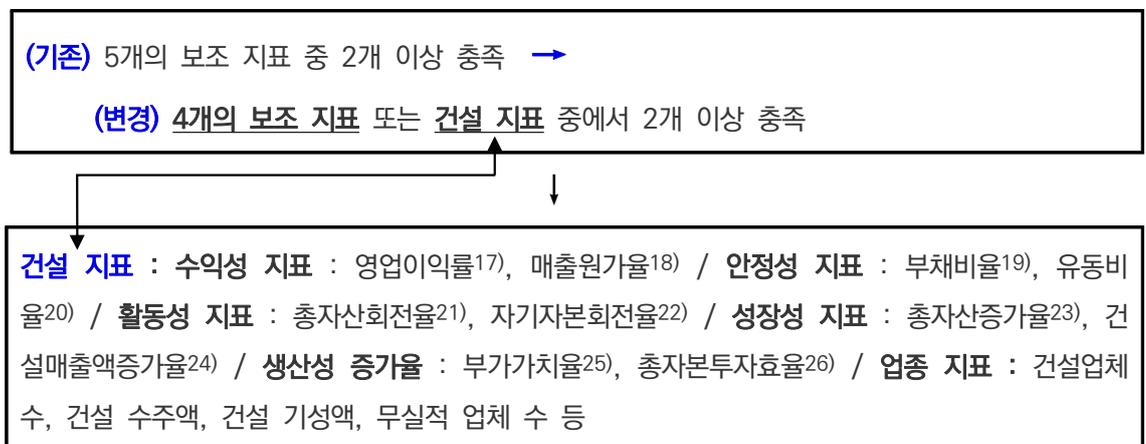
〈표 11〉 주요 재무비율

구분	비율	비고	단위	구분	비율	비고	단위	
수익성 지표	매출원가율	↑	%	성장성 지표	매출액증가율	↑	%	
	판매비율	↓	%		총자산증가율	↑	%	
	영업이익률	↑	%		영업이익증가율	↑	%	
	당기순이익률	↑	%		순이익증가율	↑	%	
	투자자본비율	↑	%		자기자본증가율	↑	%	
	자기자본비율	↑	%		현금흐름	현금흐름/차입금	↑	%
	EBITDA 마진율	↑	%			현금영업이익/금융비용	↑	%
안정성 지표	고정장기적합률	↓	%	FCF/차입금		↑	%	
	이자보상배수	↑	배	FCF/매출액	↑	%		
	차입금의존도	↓	%	생산성	부가가치율	↑	%	
	부채비율	↓	%		총자본투자효율	↑	%	
	자기자본비율	↑	%					
	유동비율	↑	%					
활동성 지표	매출채권회전율	↑	회					
	재고자산회전율	↑	회					
	자기자본회전율	↑	회					
	순운전자본회전율	↑	회					
	총자산회전율	↑	회					

※ ↑ : 높을수록 양호 / ↓ : 낮을수록 양호.

■ 건설기업의 과잉공급산업 증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 11〉의 재무비율 중 지표의 대표성 및 사용의 편의성을 감안한 세부 지표를 선정하고 기존의 업종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제안함.

- 더불어, 수주 산업으로서의 건설 특성을 감안하여 업체 수, 수주액, 기성액 등의 업종 지표를 두어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표 12〉 건설산업 대체 지표 설정(안)

과잉공급업종에 대한 판단 기준	건설산업 대체 지표(안)
① 매출액영업이익률	① 좌동
② 5개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② 4개의 보조 지표 또는 건설 지표 중에서 2개 이상 충족
(가) 가동률	(가) 가동률
(나) 재고율	(나) 재고율
(다)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다) 고용 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라) 가격·비용 변화율	(라) 가격·비용 변화율
(마) 업종별 지표	(마) 건설 지표
③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③ 좌동

- 17) 영업이익률 : 영업 활동에 대한 성과 판단 지표로 영업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 가능. (영업이익/매출액)×100.
- 18) 매출원가율 : 매출액 중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원가율 또는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매출원가율이 낮을수록 기업의 매출 이익이 높은 것으로 판단. (매출원가/매출액)×100.
- 19) 부채비율 : 자본 구성의 안정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비율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삼고 있음(업종, 규모에 따라 상이). (부채/자기자본)×100.
- 20) 유동비율 : 기업의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 비율로 표준비율은 200% 이상.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21) 총자산회전율 : 기업이 사용한 총자본의 운용 능력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총자본이 양호한 상태. 보통 2~2.5회전 이상을 양호한 상태로 봄. 매출액/자산총계.
- 22) 자기자본회전율 : 비율이 높을수록 자기자본의 활동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 자기자본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수익성 증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그러나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외상매출의 과대 또는 자기자본의 과소현상의 위험 내포. (매출액/자기자본)×100.
- 23) 총자산증가율 : 기업에 투자되고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척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됨. (당기 자산총계/전기 자산총계)×100-100.
- 24) 건설매출액증가율 : 당해년도 매출액의 전년도 실적에 대한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성장세를 판단하는 데 유용함. 경쟁 기업보다 빠른 매출액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기업의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로 볼 수 있음.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 25) 부가가치율 : 투입량과 산출량을 비교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성과와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 (부가가치/매출액)×100
- 26) 총자본투자효율 : 기업에 투자된 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자본생산성 비율.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의미. 부가가치/총자본(평균)×100.

- ❖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 지표의 활용은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과잉공급업종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활한 과잉공급업종 상태의 증명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2. 정책 제언

- ❖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업 체력 강화’라는 「기업활력법」의 제정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손쉽게 과잉공급산업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 등도 부실 및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기업 재생을 통한 산업 활력을 증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의 선정은 과잉공급 분야 해당 유무에 상관없이 선제적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변경 전)적용 대상 : 과잉공급 분야 한정 → (변경 후)적용 대상 : 선제적 사업 개편을 시행하는 모든 기업
- ❖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 효과의 극대화 및 제도 시행에 따른 착오를 감안할 때 「기업활력법」의 한시적 폐지 또는 연장이 필요함.
  - 대다수의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의 시행 및 활용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기한의 「기업활력법」은 건설기업의 사업재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임.
- ❖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 대부분의 건설기업이 영세함을 감안할 때 조세의 이연보다는 조세 감면 범위의 확대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예)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할 경우 부과되는 ‘면허세 50% 감면’ 특례 조항을 ‘전액 감면’으로 개정 등(「조세특례제한법」 특례 규정)
  - 건설기업의 구조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동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 구조 개편을 완료한 기업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신인도 평가액 산정에 추가 등).

❖ 마지막으로, 제도의 적극 활용을 위해서는 건설기업의 꾸준한 관심과 건설 수요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건설기업의 신사업 창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기업활력법」은 3년 한시의 특별법임. 따라서 동 기간 내에 사업재편을 통한 경영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건설기업은 교육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하여 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IoT를 통한 건설과 IT의 융복합 / 공중화장실, 지하철 역사 등 도심 생활편의 시설의 고급화 / 대도시 주변의 전원주택 / 도심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도심형 세컨 하우스 / 전원형 목재주택 등 수요자의 새로운 니즈(Needs)를 감안한 건설기업의 시장 창출 노력이 필요함.

임기수(연구위원 · kslim@cerik.re.kr)